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아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서산시, 청양군,
예산군, 태안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산림사업법인이거나 예외적으로 산림사업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.

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등 8개 시·군은 43건의 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 공고시 참가자격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,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여야 하는데도, 조경식재공사업(조경

시설물설치공사업)(41건), 조경공사업(2건)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도시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, 아산시장, 계룡시장, 당진시장, 서산시장,
청양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는

[주의] 산림사업 입찰 공고시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